

# 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## 1. 대상펀드

- 유진G-BEST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-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## 2.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

- 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자본시장법’)” 시행령 제 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함

- 『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』에 따라 1개월 공시 1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(원본액 50억 초과 등) 추가 공시

## 3. 소규모 펀드 처리 방안

- 소규모펀드 해소

## 4. 공시일 : 2018년 05월 30일 (수)